

40

감면대상 청년농업법인 연령기준 완화(영 §5의2③)

① 개정개요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대상 청년농업법인 기준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대표자가 법인 설립 당시 <u>15세 이상 34세 이하인</u> 사람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표자 연령기준 완화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대표자가 법인 설립 당시 <u>「후계청년농어업인법」에</u> <u>따른 청년농어업인에</u> 해당하는 사람

□ 개정내용

- 청년농업법인의 대표자 연령기준 요건을 현행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(40세 미만)으로 완화
- ※ 「후계청년농어업인법」의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과 일치시켜 정책 간 정합성 제고

□ 적용요령

-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(부칙 §1)